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별법에 관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2월 24일, 정준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2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

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2.10.)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2.11.)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2.1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6.2.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준호의원)

인구,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일극 체제로 인하여, 수도권에는 과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지방은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단일 시·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고 다극 체계의 행정 개편을 통하여 지방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정순임)

제정안은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광주전남자치도를 설치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정부 직할로 광주전남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며,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임.

2024년 기준 수도권 거주 인구는 2,604만 7,523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5,121만 7,221명)의 50.86%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전국 GRDP의 52.5%이며, 일자리는 전체의 58.5%가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제정안과 같이 광주전남자치도가 출범할 경우 인구 317만 명, GRD P 150조 원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메가시티가 형성되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자치도 설치 필요성, 명칭의 적절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 전략과의 정합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광주전남자치도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식 및 규모, 재원확보방안 등을 정하여 광주전남자치도의 통합 및 출범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건영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